



LEGAL UPDATE
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5-1호

Feb. 2025

보험 판례

-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최근 판례와 시사점 -

1. 사안의 개요

-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, 피보험자를 원고의 약혼자인 A로,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(이하 "이 사건 보험계약")
- 그런데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약 2주 전에 급성 신우신염으로 10여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(이하 '이 사건 입원치료'),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일 A가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진료의뢰서에는 "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되어 감염내과,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."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(이하 '이 사건 진료의뢰서')
-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입원치료 사실 및 이 사건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,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지 약 4개월 후 상급병원에서 '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' 진단을 받았음(이하 '이 사건 보험사고')
-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,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,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
-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사실 및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

2. 법원의 판단

- 1심 법원은,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(부산지방법원 2023. 7. 18. 선고 2023가단318693 판결)
- 2심 법원은,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진료의뢰서상 백혈구, 혈소판 등 수치에 대한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(부산지방법원 2024. 7. 18. 선고 2023나58718 판결)

- 대법원 2025. 1. 9. 선고 2024다272941 판결(이하 “이 사건 판결”)은,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입원치료 사실 및 이 사건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,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,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. 주요 설시이유는 아래와 같음
 - 상법 제655조 단서의 ‘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’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,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됨
 - 이 사건 진료의뢰서에는 A의 백혈구 수치, 혈소판 수치, 혈액 염증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,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된 지표임
 - 이 사건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의사는 당시 A의 백혈구 증가, 혈소판 증가, 혈액 염증 수치 증가를 요로감염으로 인한 반응성 혈액 이상으로 판단하였고, A는 이 사건 진료의뢰서 발급 시점으로부터 4개월가량 경과한 후에야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음. 진단받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할 때, 4개월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증가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음

3. 시사점

- 이 사건 판결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며,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음
- 이 사건 판결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음. 4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은 인과관계를 배제할 정도로 장기간이 아니며, 혈액 이상 소견과 입원치료가 백혈병의 진행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. 이는 추후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의 입원치료 및 진료의뢰서 수령 사실이 있는 타 사건에서도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 존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